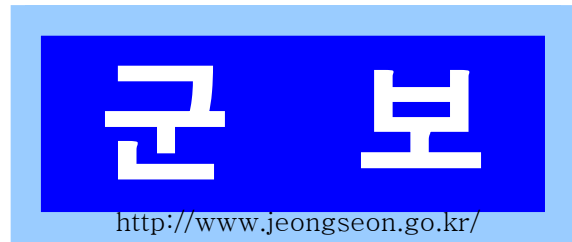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호 2008. 4. 2 (수)

【조 례】

- 조례제2098호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제2099호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 8
- 조례제2100호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 9
- 조례제2101-1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10
- 조례제2102-11호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조례제2103호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제2104호 정선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규 칙】

- 규칙제1120호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 25

【고 시】

- 고시제2008-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31
- 고시제2008-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32

【공 고】

- 공고제2008-19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33
- 공고제2008-19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3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098호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정선군정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주무실과소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제3조제 13호 및 제26호”를 “제3조제2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3조제33호”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정선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제2항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중 “정선군각종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u>군정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u>정선군정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주무실과소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6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⑤ (생략) ⑥제3조제33호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기획감사실장</u> ----- <u>제3조제2호</u> ----- ----- -----. ③~⑤ (생략) ⑥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 ----- ----- ----- ----- -----.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5.11.10> 5. 이의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현행	개정안
6. <u>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u> 7. <u>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8. <u><삭제1983.12.29></u> 9. <u>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10. <u>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11. <u><삭제 1982.02.22></u> 12. <u><삭제 1982.02.22></u> 13. <u><삭제 2001.01.09></u> 14. <u><삭제 1982.02.22></u> 15. <u><삭제 1982.02.22></u> 16. <u><삭제 1982.02.22></u> 17. <u>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18. <u>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u> 19. <u>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0. <u>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21. <u>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22. <u>농촌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u> 23. <u>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u> 24. <u>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25. <u>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u> 26. <u>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27. <u>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u>	4. <u>기타 정선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27-2.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u> 28. <u>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u> 29. <u>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u> 30. <u>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u> 31. <u>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u> 32. <u>정선군 상징물 제·개정 및 사용 심사에 관한 사항</u> 33. <u>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의결에 관한사항</u>	
제6조(간사장) ① (생 략) ②간사장은 <u>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u>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u>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 한다.</u>	제6조(간사장) ① (생 략) ②-----<u>기획감사실장으로</u>----- -----. ③간사는 <u>기획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u>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 ----- 「<u>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u>」 ----- -----.

가. 개정이유

- 조례의 재·개정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자치법규문에 나타난 용어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내용과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목적(제1조)
 -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로 변경
- 위원회 구성(제2조제2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그 직무대행을 소관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정함
- 위원회 결정사항(제3조)
 - 타 소관부서 전문 위원회에서의 기능역할로 인한 삭제
 -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수정
- 위원회 사무원 지정(제6조제2항, 제3항)
 - 간사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
 - 간사를 소관 업무담당인 “기획담당”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지정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099호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폐지이유

- 정부시책에 의해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세계화(국제화)추진협의회에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군 국제교류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100호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폐지이유

- 본 조례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라 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선군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 후 지금까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101-1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25 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률 제2조제1호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이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자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 해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매월 3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군수는 매년 1월 중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참전공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참전공로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하되, 동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중단)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 단서에 해당한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정선군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참전공로수당”은 2008년 7월을 지급개시월로 하여 지급한다.

가.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2조)
-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함(제3조)
-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
 -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으로 매월 7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 －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군수는 매년 1월 중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제5조)
 - －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함(제6조)
 - － 참전공로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제6조)
 -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함(제7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102-11호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를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선군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의 명칭은정선군하늘터로 하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둔다.

제4조본문중 “정선군민”을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하고, “이 조례”를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며 동조단서중 “정선군민”을 “군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정선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정선군수입증지조례」를 준용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라 한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3. 기타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선군 화장장(하늘터) 사용료 (제6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요 금		비 고
		관 내	관 외	
15세 이상	1구당	50,000	300,000	
15세 미만	1구당	40,000	240,000	
개장유골	1구당	30,000	150,000	
사 태	1구당	20,000	150,000	

- 주) 1. 사망자의 경우 “관내”라 함은 사망일 현재 주소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장유골의 경우 “관내”라 함은 개장당시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태의 경우 “관내”라 함은 화장일 현재 산모의 주소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정선군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선군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정선군하늘터로 하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둔다.
제4조(사용자)정선군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정선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 -----군민----- -----.
제6조(사용료)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정선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4. 기타 군수가 화장장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 ----- 「정선군 수입증지조례」 를 준용한다. <삭 제>

가. 제안이유

- 장사문화 개선과 화장문화 선호로 최근 화장장 사용량이 날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화장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선군화장장의 명칭을 정선군하늘터로 함(제2조)
- 화장장 사용료는 정선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제6조의2)
- 다른 지역 주민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관리운영비를 분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함(제9조)
- 정선군화장장의 사용료를 인상함(별표)

구 분	기 준	현행사용료(원)		개 정		비고
		관 내	관 외	관 내	관 외	
15세 이상	1구당	50,000	75,000	50,000	300,000	
15세 미만	1구당	40,000	65,000	40,000	240,000	
개장유골	1구당	30,000	60,000	30,000	150,000	
사 태	1구당	20,000	40,000	20,000	150,000	
우마·가축등	1구당	30,000	60,000	삭제	삭제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103호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를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을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제2호”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으로 하고,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단서, 제11조제1호단서중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각각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중 “군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이하“마을관리휴양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 ----- ----- ----- ----- ----- ----- -----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마을관리휴양지"라 함은 <u>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u> 에 의하여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 ----- ----- ----- -----
2. "청소비"라 함은 <u>군</u>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u>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제2호</u> 의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①마을관리휴양지는 <u>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u> 의 규정에 의하여 <u>군수</u> 가 지정한다.	제3조(지정)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청소비)① (생략)	제10조(청소비)① (현행과 같음)
②청소비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	② ----- ----- ----- -----

현 행	개 정 안
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수수료요율표에 의한다.	-----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생략)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현행과 같음)
1.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 는 청소비는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 한다.	1. ----- ----- -----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군 폐기물수집 수수료등징수조례 및 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u> 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 「정선군 폐기물관 리에 관한 조례」 ----- -----.

가. 개정이유

-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 10.25 환경부령 제252호)에 따른 불부합 근거조문 변경을 통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으로 변경(제1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으로 변경(제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5.

정선군조례 제2104호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측량법 제35조의4 및 측량법시행령 제23조의3”을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5항 본문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지명한”을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9조중 “정선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u>측량법 제35조의 4 및 측량법시행령 제23조의 3</u>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측량법</u> 」 제58조 및 <u>같은법 시행령 제35조</u> ----- ----- ----- -----.
제2조(구성)① (생략) ② 위원장은 <u>군수</u> 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④ (생략)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u>관광문화과장</u> 이 되며 서기는 <u>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u>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u>문화예술담당</u> ----- ---- <u>업무담당자가 된다.</u>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u>지명한</u>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생략) ② ----- ----- ----- ----- <u>미리 지명한</u> -----.
제9조(수당등)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u>정선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u>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 「 <u>정선군 각종위 등 실비변상조례</u> ”----- -----.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측량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측량법 제35조의4 및 측량법 시행령 제23조의3”을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함(제1조)
- 간사를 관광문화과장에서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개정함(제2조제5항)
- “지명한”을 “미리 지명한”으로 개정함(제3조제2항)
- “정선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을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함(제9조)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3. 28.

정선군규칙 제1120호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①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정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군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군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을 3인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계약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 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천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정선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 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작성자 : (인)

정선군경리관 귀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김○○		
유○○		
전○○		
서○○		
최○○		
박○○		
홍○○		
평 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여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검토자 : 직책

성명

(인)

확인자 : 직책

성명

(인)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동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등 (제2조)
 -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6개분야)
 - 공사의 경우 조경·건축·디자인전문가,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군민단체 대표 등 고르게 구성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중에서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추천 하여 다빈도 순으로 7인 이상을 선정
- 위원의 기피 및 제척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진행, 평가점수 산정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정선군 고시 제2008-1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지정해제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산지

2.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4. 보전산지 해제 필지별 내역 :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비치

2008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도엽명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계		11개소	
정 선	NJ52-10-18-2	강원 정선 북면 고양	
정 선	NJ52-10-18-2	강원 정선 북평 나전	
미 탄	NJ52-10-18-3	강원 정선 정선 굴암	
정 선	NJ52-10-18-2	강원 정선 정선 봉양	
용 탄 수 향	NJ52-10-18-1 NJ52-10-11-3	강원 정선 북평 숙암	
봉 산	NJ52-10-11-4	강원 정선 북면 유천	
문 곡	NJ52-10-18-4	강원 정선 정선 덕우	
문 곡	NJ52-10-18-4	강원 정선 남면 문곡	
용 탄	NJ52-10-18-1	강원 정선 북평 숙암	
호 명	NJ52-10-19-3	강원 정선 임계 덕암	
고 단	NJ52-10-12-3	강원 정선 임계 송계	

정선군 제2008-18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 표 자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하 천 명		송현천(지방2급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임계면 임계2리 48-23번지 일원		
	면 적	영구점용 A=42m ² (임시점용 A=256m ²)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3월 28일 ~ 영구 (공사기간 2008.03.28 ~ 2008.10.30)		
	목 적 및 사 유	임계2리(태봉안)농산물 수송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공작물설치(라멘교)		
※ 설계도서 “별도보관”				

정선군 공고 제2008-19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금회연장)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 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정선읍	면 도	덕북선	정선 102호	여탄리 441-6	여탄리 15	13.0km (0.24km)		7	5	도로 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08. 03. ~ 2008. 08.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 장 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560-2486)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당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정선읍 덕우리	산39-1 (산39)	구 (임)	304		국(건설부)				
2		산35	임	1,127	서울 서초구 잠원동57 대림아파트1-1102	김 규 종				
3		산35-1 (산35)	도 (임)	8		국(건설부)				

정선군 공고 제2008-19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8일

정 선 군 수

1. 강제처리대상차량 : 강원80노4933 외 11대(붙임 내역참조)
2.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8년 4월 22일 이후
3. 보관 및 강제폐차 장소 : 영월 폐차장
4. 공 고 기 간 : 2008년 03월 30일 ~ 2008년 04월 21일(23일)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으로써 귀하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대상차량

소유주 (법인명)	주민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등록번호	방치장소	발생시기	보관장소
김은경	820223-*****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09번지 2호 4	강원80노4933	석영공업사	2006-03-30	영월폐차장
이상호	650123-*****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94번지 130호 9/6	부산3거9290	석영공업사	2006-07-10	영월폐차장
(유)동역상사	402-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31번지 3호 보경빌딩 4F	전북29나1345	석영공업사	2006-07-25	영월폐차장
송상언	750713-*****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667호 15/1	서울31너3350	석영공업사	2006-05-19	영월폐차장
수강산업(합)	225-81-*****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7번지 2호	강원70가2828	석영공업사	2004-01-08	영월폐차장
이관중	6411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7번지 푸른마을 603-502	경기32너5428	석영공업사	2006-05-18	영월폐차장
노성호	68081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번지 31호 40/2	02어9203	석영공업사	2006-05-08	영월폐차장
김태영	61031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74번지 23호 1/4	강원30나9991	석영공업사	2006-06-07	영월폐차장
이상우	640822-*****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55번지 61/8 303호	충북32마6915	석영공업사	2006-05-08	영월폐차장
김원곤	48112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91번지 9호 5/6	울산31가9599	석영공업사	2006-03-31	영월폐차장
권춘섭	641102-*****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44번지 7호 4/3	강원28마4494	석영공업사	2006-03-30	영월폐차장
장현수	7108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7번지 4호 14/4 강북타운 B동 2동 203호	서울38더4344	석영공업사	2006-07-25	영월폐차장

세부내역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강원80노 4933	김은경	820223-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09번지 2호 4	영월폐차장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9688)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19293)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67400-2049)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6539)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17392)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6117)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11899)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도시교통과-16972)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부서 (도시교통과-17854) ■단독저당 을부번호(4211-2002-000375)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캐피탈(주)) ■정선경찰서 (교통63310-731)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991)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2560) ■정선군수 (재무과-11078)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도교91180-3133)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3079)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부산3거9290	이상호	650123-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94번지 130호 9/6	영월폐차장	■부산광역시 남구청 세무과 (세무13410-1275)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산업국 환경경제과 (환경경제과-)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과(환경경제과-863)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과(환경경제과-1435)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과(환경경제과-18543)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24)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교통91153-2039)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91115-4261) ■부산광역시 남구청세무과 (세무13410-70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세무13410) ■부산남부경찰서(051.626.8957) (교통63310-735) ■부산동부 (교통91110-5) ■부산동부경찰서 (교통63310-4157) ■부산동부경찰서 (교통63310-4496) ■부산동부경찰서 (교통63310-3548) ■부산동부경찰서 (교통63310-3720) ■부산동부경찰서 (교통63310-3908) ■부산동부경찰서장(051-465-6659) (교통63310-1165) ■부산동부경찰서장(051-465-6659) (경비교통과-3834) ■부산동부경찰서장[051-465-6659] (교통63310-303) ■부산동부경찰서장[051-465-6659] (교통63310-774) ■부산동부경찰서장[051-465-6659] (교통63310-1561) ■부산수영구청 (교통91115-2186) ■부산지방노동청 (관리68430-16141) ■부산지방법원 (99카단17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136번지 (김송갑) ■부산지방법원 (99카단308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851번지 1호 ((주)명신하이넷) ■부산진구청교통과대.압80라6907 (교통91115-2292(99.6.21)) ■부산진구청교통과대압80라4934 (교통91115-1518) ■부산진구청교통과대압80라4934(교통91115-2074(99/06/05)) ■부산진세무서장 (징세46120-5711) ■산청경찰서장(051-973-3684) (생활안전교통과-940) ■산청경찰서장(055-973-3684) (생활안전교통과-421) ■산청경찰서장(055-973-3684) (생활안전교통과-1144) ■산청경찰서장(055-973-3684) (생활안전교통과-1669) ■서울성북구청장(02-920-3438) (교통관리과-9589) ■서울성북구청장(02-920-3438) (교통관리과-12128) ■수영세무서장 (징세46122-227)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전북29나 1345	(유)동역상사	402-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31번지 3호 보경빌딩 4F	영월폐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남부지사 (직관1621-1573) ■군산시 교통행정과(99-6268) (교행91113-2151) ■덕진구청 23809 (경행91123-2622)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9123) ■완산구지역경제과 :대체7도2139 (지경91123-2638) ■완산구청 (748411) 위반7노3255 (경행91123-1714) ■완산구청 세무과 ☎063-220-5389 (세무과-9809) ■완산구청도로교통과 (도교91123-3450) ■완산구청도로교통과 (도교91123-4869) ■완산구청세무과 (완산세무-481) ■완산구청세무과 (세무13410-863) ■완산구청세무과 ☎063-220-5389 (세무과-2031) ■완산구청세무과(063-220-5287) (세무13410-148) ■완산구청세무과(T.220-5287) (완산세무-9769) ■완주경찰서(063-261-0030) (교통 63310 - 1014) ■전주 덕진구청 27004 (경행91123-2770) ■전주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15060) ■전주덕진도로교통 (도교46121-5536) ■전주덕진도로교통 (도로교통과-5481) ■전주덕진도로교통 (도로교통과-6681) ■전주북부경찰서 (교통63310-776) ■전주북부경찰서(063-212-5000) (교통63310-000105) ■전주북부경찰서(063-212-5000) (교통63310-004769) ■전주세무서징세과 (징세46120-920) ■전주시 덕진구청 (48116) (경행 91123-1942) ■전주시 완산구청 733416 (경행91123-214) ■전주시 완산구청 세무과 ☎063-220-5389 (세무과-9175) ■전주시 완산구청(119831.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서울31너3350	송상언	750713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667호 15/1		■광진구청 (2004-07-201757) (교지200407) ■구로구청 (2004-03-101173) (교통행정과-13780)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지관1621-1088) ■서울 중구청(2260-1484) (교행91150) ■서울시 중구청 (세일13410-1230) ■서울중구청 (교지91123-3960 (01.05)) ■서울중구청2260-4136 (교지91123-5176(03.07)) ■성동경찰서(02-2293-0112) (교통과-869)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200410) ■중구청 (교행91150) ■중구청 (교행91150-) ■중구청 환경위생과(02)2260-1974) (환경위생과-9487)
강원70가2828	수강산업합자 회사	225-81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7번지 2호	영월폐차장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8442)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9688)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19293)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67400-332)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67400-2049)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67400-2326)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6539) ■강원도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17392)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6117)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11899) ■강원도 정선군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3079)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지사 (직징1620-278) ■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시지사 (가일52104-10693) ■정선경찰서 (교통63310-1023) ■정선군 재무과 (재무13410-3278) ■정선군 재무과(560-2295) (재무 13410-10158) ■정선군 환경보호과 (환경 67400-1751) ■정선군도시교통과 (도교91123-1326)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도교91123-10684)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3079) ■정선군청(033-560-2366) (도교 91180-10173) ■정선군청재무과 (재무13400-550) ■정선군청환경보호과(T.560-2331) (환경67100-782)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경기32너5428	이관중	64110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7번지 푸른마을 603-502	영월폐차장	■강남구청장 (교지91115-2102) ■과천시청 (지경91153-47) ■과천시청 (지경91153-2950) ■과천시청 (건교91153-50274) ■국민건강보험공단성남남부지사장 (자징0421-518) ■분당경찰서장 (교통63310-1466) ■분당구청 (세무13410-3931) ■분당구청장 (징수13410-505) ■분당구청장 (지경91110-2050) ■불법주정차위반 (교지91115-514) ■서울 강남구청장 (교지91115-702) ■서울 마포구청장 (교지13621-2248) ■서울 서초구청장 (교지91115-7576) ■서울 송파구청장 (교통91113-287(00.8)) ■서울 송파구청장 (교통91113-6526(00.4)) ■서울 송파구청장 (교통91113-6577(00.5)) ■서울 송파구청장 (교통91113-6607(00.6)) ■서울강남구청(교통지도과) (교지91115-871) ■서울강남구청(교통지도과) (교지91115-1086) ■서울강남구청(교통지도과) (교지91115-4119) ■서울강남구청장 (교지91115-754) ■서울강남구청장 (교지91115-4796)
02어9203 (부산3거9290)	노성호	680813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번지 31호 40/2	영월폐차장	■부산연산경찰서장(051-759-8566) (경비교통과-5741) ■부산연산경찰서장(051-759-8566) (경비교통과-6201) ■부천시오정구청(032-680-2209) (오정구세무과-8509) ■부천시청*부산30구9865* (차량관리과-7029) ■부천오정구청☎032-680-2240 (오정구환경위생과-11695) ■부천중부경찰서장 (경비교통과-2899)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강원30나 9991	김태영	610310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74번지 23호 1/4	영월폐차장	■단독저당 을부번호(4203-2002-0073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14호 동성제2빌딩8층((주)한국금융네트워크) ■강원도 원주시 TEL)033-738-5956 (교통행정과-7790) ■강원도 원주시 TEL)738-5956 (교통행정-24344) ■강원도 원주시 TEL)738-5956 (교통행정-12768)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지사(746-5711,745-1588) (자징1621-884) ■원주경찰서 (교통63310-80) ■원주경찰서 (교통63310-22) ■원주시 세무과(033-741-2494) (세무과-2575) ■원주시청 (교통91123-1345) ■주민자치지원과 (주민91170-1624) ■주민자치지원과 (주민91180-16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03카단5)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50번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03카단11)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50번지 (소관:원주 명륜 244 두루넷빌딩5층 강원채권센터)(삼성캐피탈 주식회사) ■횡성경찰서 T.033-34-9569 (생활안전교통과-1667) ■횡성경찰서 T.033-343-9569 (생활안전교통과-1234) ■횡성경찰서 방법교통과 T.033-342-3333 (교통63310-1156) ■횡성군청 재무과 T.033-340-2294 (재무과-3586)
충북32마 6915	이상우	640822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55번지 61/8 303호	영월폐차장	■정선군수 (도시교통과-18047) ■정선군청(033-560-2512) (도시교통과-9295) ■정선군청(033-560-2512) (도시교통과-13168) ■제천시청 교통과 (640-5732) (교통91113-243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4카단12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21호(현대카드주식회사)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30)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33)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63)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524)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74)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05)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25)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16) ■충주경찰서(043)842-5123 (교통63310-00001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울산31가9599	김원곤	481120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91번지 9호 5/6	영월폐차장	■국민건강보험 울산중부지사(052-241-0114) (자징1621-542)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648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581번지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93019)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136번지 74호(소관:신용채권관리센터)(서울보증보험(주)) ■울산광역시 (교기91150-730) ■울산남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10097) ■울산남구 교통행정과(052-226-5942) (교통행정과-861) ■울산남구 교통행정과(229-9365) (교행91115-11337) ■울산남구 지방세과(052-226-3590) (지방세과-16455) ■울산남구 징수과 (징수13410-1439) ■울산남부경찰서 (교통63310-203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교63310-6364)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교63310-5534)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교63310-4712)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교63310-189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138)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627)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114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1443)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1645)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보관장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역
강원28마 4494	권춘섭	641102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44번지 7호 4/3	영월폐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태백지사 (급징1621-124) ■단독저당 을부번호(4213-2001-00077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동 679번지 (엘지캐피탈(주)) ■태백경찰서 (교통63310-229) ■태백경찰서 (경비교통63310-000176)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63310-204) ■태백경찰서(581-3333) (경비교통63310-000110) ■태백경찰서(581-3333) (경비교통과63310-000096) ■태백경찰서경비교통과(581-4550) (교통63310-207) ■태백시 민원봉사과(550-2159) (민원봉사과-2895) ■태백시 민원봉사과장 (민원91180-1205) ■태백시 민원봉사과장 (민원91180-1391) ■태백시 민원봉사과장 (민원91180-1745) ■태백시장 (세무13410-1626) ■태백시장[300000원] (민원14314/07000894) ■태백시장[600000원] (민원14314/07000893)
서울38더 4344	장현수	7108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7번지 4호 14/4 강북타운 B동 2동 203호	영월폐차장	■단독저당 을부번호(1129-2002-00255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동 679번지 (LG카드(주))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901-6260 (교행91150-399) ■강북구청 교통행정과(901-6260)(교통행정과-9281(05.4.13)) ■강북구청 교통행정과(901-6543) (교통행정과-8769) ■강북구청 세무과 (세무13410) ■강북구청장(02)901-2283) (환경위생과-1815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3카단18561)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908번지 (순천지점)(주-대운상호저축은행) ■남양주시 교통행정과(031-590-4425) (교통행정과-22866) ■북부경찰서(902-3325) (교통63310-7340) ■서울북부경찰서(02-902-3325) (교통 63310 - 400) ■서울중구청 (교지91123-196(02.08)) ■서초구청(02)570-6615 (주차91115-474(02/10)) ■서초구청(02)570-6615 (주차91115-6937(02/09)) ■의정부시(828-2853) (교행91158-30224)